

안양도시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제정	2000.	10.	24.	훈령	제398호	
개정	2003.	8.	20.	훈령	제430호	
개정	2004.	8.	30.	훈령	제442호	
일부개정	2009.	6.	12.	훈령	제531호(제명수정)	
일부개정	2011.	2.	8.	훈령	제560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1.	12.	29.	훈령	제575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2.	3.	16.	훈령	제57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	1.	17.	훈령	제609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6.	4.	15.	훈령	제653호	
일부개정	2016.	6.	29.	훈령	제657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7.	6.	15.	훈령	제670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8.	6.	20.	훈령	제684호	
일부개정	2019.	7.	5.	훈령	제69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0.	28.	훈령	제703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0.	7.	10.	훈령	제712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2.	1.	10.	훈령	제731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4.	12.	31.	훈령	제757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양도시공사 업무의 감독범위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16., 2016. 4. 15., 2019. 7.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16., 2016. 4. 15., 2019. 7. 5.>

1. “위탁부서”란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과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위탁계약체결을 주관한 부서를 말한다.
2. “대행사업”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공사가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
3. “대행사업비”란 공사가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4. “지역개발사업”이란 조례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사간의 업무처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3. 16., 2016. 4. 15., 2019. 7. 5.>

제4조(지도·감독) 공사업무의 지도·감독은 대행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부서별 지도·감독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5.>

제5조(지시사항처리) ① 공사 사장은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지도·감독부서의 실·국·소장과 부시장을 거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4. 15., 2018. 6. 20., 2019. 7. 5.>

② 지시사항 처리에 10일 이상 걸리거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처리계획 또는 추진상황을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9. 7. 5.>

제6조(보고) 공사 사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보고내용별로 지도·감독 부서의 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7. 5.>

제7조(건의) 공사 사장은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2. 3. 16., 2019. 7. 5.>

제8조(협조요청) 공사 사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도·감독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2. 3. 16., 2016. 4. 15., 2019. 7. 5.>

제9조(대행사업비) ① 공사의 대행사업비 신청은 위탁부서를 거쳐 예산법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4. 15., 2016. 6. 29., 2019. 7. 5.>

② 공사가 요구한 대행사업비 중 단위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인 수선유지비·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위탁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집행한다. 다만, 건물유지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20., 2018. 6. 20., 2019. 7. 5.>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3. 16.>

[제목개정 2012. 3. 1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20. 훈령 제43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30. 훈령 제44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2. 훈령 제53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훈령 제56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1. 12. 29. 훈령 제575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2012. 3. 16. 훈령 제57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 17. 훈령 제60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생략

부칙 <2016. 4. 15. 훈령 제65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9. 훈령 제657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하고,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② 생략

부칙 <2017. 6. 15. 훈령 제67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2018. 6. 20. 훈령 제68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훈령 제69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훈령 제703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도시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도시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별표 1 <2019. 10. 28. 훈령 제 703호> 참조]

② 및 ③ 생략

부칙 <2020. 7. 10. 훈령 제71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도시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도시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별표 1 <2020. 7. 10. 훈령 제712호> 참조]

② 및 ③ 생략

부칙 <2022. 1. 10. 훈령 제731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도시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도시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별표 1 <2022. 1. 10. 훈령 제731호> 참조]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24. 12. 31. 훈령 제757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도시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도시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별표 <2024. 12. 31. 훈령 제 757호> 참조]

[별표 1] <개정 2024.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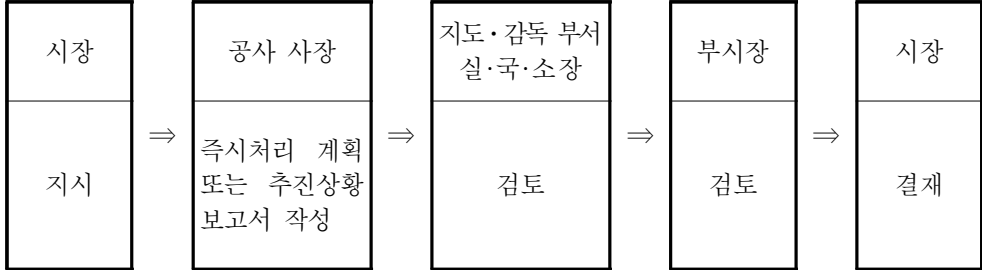
부서별 공사업무의 지도·감독범위(제4조 관련)

구분	부서	지도·감독 범위
공통	예산법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정관·규칙·규정의 제정·폐지·개정의 승인 ○ 기구의 신설·폐지·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임·직원 급여, 퇴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 대행사업의 총괄 조정 ○ 공사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 ○ 그 밖에 다른 부서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대행사업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도상가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료·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전반 - 대행사업비의 편성·집행에 관한 감독 - 제반시설·장비의 관리실태 - 그 밖에 상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전반
	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수영장, 체육관, 빙상장), 석수체육공원, 자유공원, 톨리경기장, 호계체육관,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비산체육공원, 새물공원, 서조체육시설,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 대행사업비의 편성·집행에 관한 감독 - 제반시설·장비의 관리실태 - 그 밖에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보안등 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사업비의 편성·집행에 관한 감독 - 제반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 그 밖에 가로·보안등 업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철도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요금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신설·확장·폐지에 관한 사항 - 운영시간의 연장·단축에 관한 사항 - 대행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독 - 제반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 그 밖에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구분	부서	지도·감독 범위
	대중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인요금·보관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견인차량의 관리, 제반장비 관리실태 - 견인지역 확장·축소에 관한 사항 - 견인차량의 운행시간 조정 - 대행사업비의 편성·집행에 관한 감독 - 그 밖에 견인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영차고지 운영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행사업비의 편성·집행에 관한 감독 - 그 밖에 공영차고지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장비 관리 실태 - 대행사업비의 편성·집행에 관한 감독 -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봉투 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사업비의 편성·집행에 관한 감독 - 종량제봉투 출납관리 - 그 밖에 종량제봉투 업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핑장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핑장 관리에 관한 업무 - 대행사업비의 편성·집행에 관한 감독 - 그 밖에 캠핑장 업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사업	신성장전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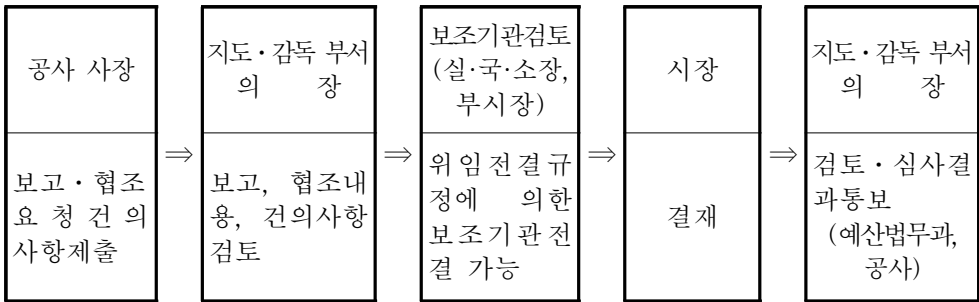
[별표 2] <개정 2019. 7. 5.>

지시사항 처리절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9. 7. 5.>

보고·협조요청·건의사항 처리절차(제6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9. 7. 5.>

대행사업비 신청절차(제9조제1항 관련)

